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약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 안 제116조제3항은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광고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임.
- 이러한 취지에서 안 제116조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1)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정 의결된 것임.²⁾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당초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되었음. 2025.09.03.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 그러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규정할 경우, 그 의미가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까지 금지하는 의미인지, 온라인 광고 행위 수단을 폭넓게 규정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할 수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안 제116조제3항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에 따른 광고”로 수정하는 의견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16조제3항 등에 대한 수정의견>

대 안	수 정 의 견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u>광고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u>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	제152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 안	수 정 의 견
선하거나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 <u>2조제1항제1호</u>에 따른 <u>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u>광고한 사람</u>	선하거나 <u>광고한 사람</u>

- 그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 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